

# (종합, 치과, 한방, 요양) 병원 자율점검표

상호(명칭)	허가번호	
개설자	전화번호	
소재지	병상수	실, 병상
마약류취급	<input type="checkbox"/> 마약 <u>      </u> 종 <input type="checkbox"/> 항정신성의약품 <u>      </u> 종(프로포폴 유,무) <input type="checkbox"/> 취급안함	

★ 개설자(관리책임자)께서 직접 점검하시고 “예”, “아니오” 표시(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시)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1. 환자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있다	
2.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은 세탁물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하거나, 『의료기관 세탁물처리규칙』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자체 처리하고 있다.	
3. 자신이 진찰(조산) 또는 검인하지 않고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는다.	
4. 의료인은 면허된 의료행위만을 하고,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종사자에게 면허된 것(업무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시키지 않는다.	
5.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① 「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②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 제공하는 행위 등	
6. 의료인으로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 등과 같은 품위손상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 등이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한 때 지체 없이 응한다.	
8.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지 않는다. (다만 의료법 제21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	
9. 진료기록부 등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을 비치하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며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10. 진료에 관한 기록을 의료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보존하고 있다. ① 환자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②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③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 부분 3년	
11.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	
12. 비급여 진료비용과 증명명 수수료를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게시한다	
13.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만이 표시되어 있다.	
14.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한 경우,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는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크기의 1/2 이내로 표시한다.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15.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않는다.	
16. 아래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모두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고 광고한다.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③ 전광판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⑤ 인터넷 홈페이지	
17. 의료기관 변경사항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변경신고 한다 (단, 대진의, 의료인수 변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변경신고 한다)	
18. 특수의료장비는 관할 보건소에 설치등록을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고 있다.	
19.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관할 보건소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정기적인 검사와 측정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한다.	
20.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또한 한방병원의 경우 규격품 사용의 의무화된 한약의 비규격품)은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물품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소독하여 사용한다.	
21. 의료법 기준에 적합한 당직 의료인을 두고 있다(입원환자 200인까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 1인, 간호사의 경우 2인)	
22. 병원(200병상 이상) 및 종합병원에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경우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3 서울시장구청장(보건소장)이 보건의료정책상 필요에 의해서 지도와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등의 관계서류 검사 요구에 응한다.	
24. 의료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취업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경찰서에 확인했거나 확인하고 있다	
25. 사무장 병의원의 폐해는 잘 알고 있으며, 사무장병의원에 고용된 의사가 자진신고서 행정처분(의사면허자격정지기간 2/3범위)이 감경됨을 알고 있다. ▶ 사무장병의원 : 비의료인이 전액·공동으로 출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불법의료기관	
<p>상기 점검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고, 개설자(법인인 경우 관리책임자) 본인이 직접 읽고 점검하였습니다.</p> <p>■ 점 검 일 자                    2016.   .   .</p> <p>위 개설자(관리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p> <p>○ ○ ○ 구청장(보건소장) 귀하</p>	

#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자율점검표

상호(명칭)	신고번호		
개설자	전화번호		
소재지	병상수	실,	병상
종사자현황 (치과의원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치위생사 _____명 <input type="checkbox"/> 치과기공사 _____명		
마약류취급	<input type="checkbox"/> 마약 _____종 <input type="checkbox"/> 향정신성의약품 _____종(프로포폴 유무) <input type="checkbox"/> 취급인합		

★ 개설자(관리책임자)께서 직접 점검하시고 “예”, “아니오” 표시(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시)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1. 환자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있다	
2.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자체 처리하고 있다.	
3. 자신이 진찰(조산) 또는 검안하지 않고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는다.	
4. 의료인은 면허된 의료행위만을 하고,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종사자에게 면허된 것(업무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시키지 않는다	
5.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① 「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 행위 ②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 제공하는 행위 등	
6. 의료인으로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요구 등과 같은 품위손상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지 않는다. (다만 의료법 제21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	
8. 진료기록부 등(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을 비치하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며,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9. 진료에 관한 기록을 의료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보존하고 있다.(환자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10.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	
11.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를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게시한다	
12.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만이 표시되어 있다.	
13.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한 경우,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는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크기의 1/2이내로 표시한다.	
14.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않는다.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15. 아래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모두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고 광고한다.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③ 전광판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⑤ 인터넷 홈페이지	
16.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두고 있다.	
17. 의료기관 변경사항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변경신고 한다 (단, 대진의, 의료인수 변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변경신고 한다)	
18. 특수의료장비는 관할 보건소에 설치등록을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고있다.	
19.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관할 보건소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정기적인 검사와 측정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한다.	
20.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또한, 한의원의 경우 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된 한약의 경우 비규격품 한약)은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21.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물품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소독하여 사용하고, <b>1회 용 주사기 등 1회 용품은 재사용하지 않는다</b>	
22. 서울시장구청장(보건소장)이 보건의료정책상 필요에 의해서 지도와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등의 관계서류 검사 요구에 응한다.	
23. 의료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취업전 의료인(의사,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경찰서에 확인했거나 확인하고 있다	
24. 사무장 병원의 폐해는 잘 알고 있으며,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자진신고서 행정처분(의사면허자격정지기간 2/3범위)이 감경됨을 알고 있다. ▶ 사무장병원 : 비의료인이 전액·공동으로 출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불법의료기관	
상기 점검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고, 개설자(법인인 경우 관리책임자) 본인이 직접 읽고 점검하였습니다.	
■ 점 검 일 자                    2016.   .   . 위 개설자(관리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 ○ 구청장(보건소장) 귀하	

## 안경업소 자율점검표

상호(명칭)	등록번호		
개설자	전화번호		
소재지	종사안경사		명

★ 개설자(관리책임자)께서 직접 점검하시고 “예”, “아니오” 표시(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시)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2. 업소의 실제 개설자는 안경사다.	
3.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다.	
4. 콘택트렌즈 판매시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안경업소를 폐업 하거나, 개설자·개설장소 등 등록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만 신고한다.	
6. 거짓 또는 과대광고 및 영리를 목적으로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지 않는다.	
7. 서울시장·구청장(보건소장)이 필요에 의해서 지도와 보고를 명한 때, 관계 공무원이 시설 등을 검사할 때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	
8.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안경사 업무를 행하지 않는다.	
9.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하게 하지 않는다.	
<p style="text-align: center;">상기 점검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개설자 본인이 점검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 점 검 일 자                    2016.   .   .                      위 점검자    직위                    성명                    (인)                      ○ ○ ○ 구청장(보건소장) 귀하                 </p>	

## 치과기공소 자율점검표

상호(명칭)	등록번호		
개설자	전화번호		
소재지	종사기공사		명

★ 개설자(관리책임자)께서 직접 점검하시고 “예”, “아니오” 표시(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시)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2. 업소의 실제 개설자는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이다.	
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다.	
4.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를 1년간 보존하고 있다.	
5.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의해서만 치과기공물을 제작한다.	
6. 치과기공소를 폐업하거나 개설자, 개설장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만 신고한다.	
7.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 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를 일탈하지 않는다.	
8.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지 않는다.	
9.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하지 않는다.	
<p style="text-align: center;">상기 점검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개설자 본인이 점검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 점 검 일 자                    2016.   .   .                      위 점검자    직위                    성명                    (인)                      ○ ○ ○ 구청장(보건소장) 귀하                 </p>	



#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자율점검표

상호(명칭)	신고번호		
개설자	전화번호		
소재지	병상수	실,	병상
종사자현황 (치과의원에 한함)	□ 치위생사 _____명 □ 치과기공사 _____명		
마약류취급	□ 마약 _____종 □ 향정신성의약품 _____종(프로포폴 유,무) □ 취급인합		

★ 개설자(관리책임자)께서 직접 점검하시고 “예”, “아니오” 표시(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시)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상반기	하반기
1. 환자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있다		
2.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자체 처리하고 있다.		
3. 자신이 진찰(조산) 또는 검안하지 않고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는다.		
4. 의료인은 면허된 의료행위만을 하고,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종사자에게 면허된 것(업무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시키지 않는다		
5.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①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 행위 ②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 제공하는 행위 등		
6. 의료인으로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요구 등과 같은 품위손상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지 않는다. (다만 의료법 제21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		
8. 진료기록부 등(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을 비치하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며,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9. 진료에 관한 기록을 의료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보존하고 있다.(환자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10.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		
11.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를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게시한다		
12.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만이 표시되어 있다.		
13.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한 경우,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는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크기의 1/2이내로 표시한다.		
14.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않는다.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상반기	하반기		
15. 아래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모두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고 광고한다.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③ 전광판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⑤ 인터넷 홈페이지				
16.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두고 있다.				
17. 의료기관 변경사항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변경신고 한다 (단, 대진인, 의료인수 변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변경신고 한다)				
18. 특수의료장비는 관할 보건소에 설치등록을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고있다.				
19.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관할 보건소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정기적인 검사와 측정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한다.				
20.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또한, 한의원의 경우 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된 한약의 경우 비규격품 한약)은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21.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물품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소독하여 사용하고, <b>1회 용 주사기 등 1회 용품은 재사용하지 않는다</b>				
22. 서울시장·구청장(보건소장)이 보건의료정책상 필요에 의해서 지도와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등의 관계서류 검사 요구에 응한다.				
23. 의료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취업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경찰서에 확인했거나 확인하고 있다				
25. 사무장 병의원의 폐해는 잘 알고 있으며, 사무장병의원에 고용된 의사가 자진신고시 행정처분(의사면허자격정지기간 2/3범위)이 감경됨을 알고 있다. ▶ 사무장병의원 : 비의료인이 전액·공동으로 출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불법의료기관				
<p>상기 점검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고, 개설자(법인인 경우 관리책임자) 본인이 직접 읽고 점검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b>■ 점 검 일 자</b>                    2016.                    .                    .  <b>위 개설자(관리책임자)</b>                    직위                    성명                    서명         </p> <p>○ ○ ○ 구청장(보건소장) 귀하</p>				
점 검 자				
점 검 일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점 검 결 과

